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심택(이하 '회사'라 함)의 이사회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이사회와 운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③ 사외이사는 업무 수행 관련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 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구성)

-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기타 비상근이사 포함)으로 구성하되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1 이상으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정기주주총회 후 개최하는 첫 회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며, 의장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③ 의장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의장 직무를 대행할 이사의 순서를 미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이사회 종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정한 일자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소집 및 통지)

-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써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의결방법)

- ① 이사회 의결은 이사 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 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④ 이사회 의결에 있어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8조(의결사항)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단, 이사회 소집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집행한 후 이사회 추인을 얻을 수 있다.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2.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주주총회의 소집
4.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5. 대표이사의 선임
6. 이사의 직위 위촉 및 해촉
7. 상근이사의 타회사 중역 겸임 또는 타 직업의 겸업에 관한 사항
8.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승인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신주발행 및 사채모집에 관한 사항
11. 국내외 중요 여·수신에 관한 사항
12. 중요한 채무보증에 관한 사항
13. 중요한 투자에 관한 사항
14. 중요한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15. 중요한 담보의 설정에 관한 사항
16. 회수 불능 채권의 처분에 관한 사항
17. 근로조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
18.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 100분의3 범위 내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
19. 정관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에 따른 종류주식 발행시 배당률, 전환가능기간, 상환가액, 상환기간의 결정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른 신주발행여부 및 발행시 주식의 종류, 수 및 발행가격의 결정
21. 정관 제10조에 따른 신주인수권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 처리방법의 결정
22. 정관 제9조의4에 따른 제3종 종류주식 발행시 상환가액 및 상환기간의 결정
23. 회사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범위의 결정
24. 정관 제3장 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의 결정
25. 정관 제43조에 따른 상당역 및 고문 위촉에 관한 결정
26. 정관 제53조 제3항 및 본 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27.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28. 이사회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29.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관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회사가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포함)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제9조(보고사항)

-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이사회 의결사항의 집행과 실적
 - 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이사회 및 감사에게 연 1 회 보고하고,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연 1 회 보고한다.

제10조(이사 이외자의 출석)

-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 이외자의 출석을 요구하며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